



수 신 회원사 대표

참 조

제 목 휴양시설(리조트) 여름 성수기 이용신청 안내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도회는 회원사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리조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리조트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접수를 통해 추천에 의하여 이용가능하오니 여름 성수기 이용 희망 회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휴양시설 이용신청서 및 추천 위임장을 2026. 5. 13(수) 10:00까지 우리도회(FAX:053-755-2380)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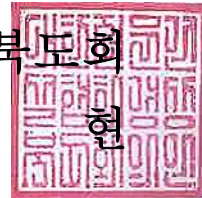
- 가. 대 상 자 : 우리도회 소속 정회원 임·직원(가족 포함)
- 나. 이용시설 : 대명리조트(전국 19개소), 한화리조트(전국 17개소)
- 다. 이용요금 : 무기명 회원가격(각사 리조트 홈페이지 확인)
- 라. 성수기 이용 대상기간
 - 대명리조트 : 2026. 7. 17(금) ~ 2026. 8. 22(토)[37일간]
 - 한화리조트 : 2026. 7. 25(토) ~ 2026. 8. 2(일)[9일간]
- 마. 예약결과 통보
 - 2026. 5. 22(금) 이후
- 바. 이용기준 및 일정 변경·취소
 - 리조트 이용은 정회원 1업체당 연중 1회 이용함을 원칙으로 함.

- 주말, 연휴, 성수기 이용 시 이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말, 연휴, 성수기 이용을 신청할 수 없음. 단 평일 이용신청은 가능.
※ 주말, 연휴, 성수기는 예약 집중현상으로 이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리조트 이용이 확정된 회원사가 일정변경 및 취소시에는 이용 예정일 10일전까지 협회로 통보하여야 함(단, 위약금 발생 시 신청자 부담)
- 대명리조트의 경우 투숙예정일 기준 8일전 까지 선결제 필수이며 예약 불이행시 위약금(최고 100%)이 발생합니다.
- 이용요금은 이용일자, 이용지역, 객실타입, 뷰타입별로 상이하나 평균 성수기 1박기준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이며, 정확한 이용요금은 각사 리조트 홈페이지에서 무기명 회원가격을 확인바랍니다.

- 붙임 1. 휴양시설 운영기준 1부.
2. 휴양시설 이용신청서 1부.
3. 휴양시설 추첨 위임장 1부. 끝.

[도회 홈페이지(gyeongbuk.kosca.or.kr) → 정보광장 → 시·도회 자체서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 장 최 진 현



담당자 주임 이희진 주임 박성민 부장 박선화 실장 이승수 사무처장 이승희
시행 전건협 경북 제320호(2026. 5. 8)

우 41252 대구 동구 화랑로 47(신천동) 전문건설회관 6층 / <http://gyeongbuk.kosca.or.kr>
전화 (053)288-3318 / 전송 (053)755-2380 / 전자우편 lhj4887@kosca.or.kr

휴양시설 운영기준

2019년 3월 17일 제정

제1조(목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이하 "도회"라 한다) 소속 정회원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실시하는 휴양시설(이하 "리조트"라 한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조트』라 함은 우리도회에서 회원권을 구입한 민간기업 리조트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이용료』라 함은 리조트 이용자가 리조트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라 함은 여름은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겨울은 12월 20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기간을 말한다. 단, 매년 리조트 회사가 정하는 성수기 일자로 변동될 수 있다.

제3조(이용대상자) 리조트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소속 정회원 임·직원(가족 포함) 및 협회직원
2. 기타 도회(회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주관처) 리조트 운용 및 관리 등의 주관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로 한다.

제5조(이용기준) ① 리조트의 이용은 정회원 1업체당 연중 1회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1회 이용시 최대 2박까지 이용 가능하며, 2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원가격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주말, 연휴, 성수기(여름, 겨울) 이용시 이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말, 연휴, 성수기(여름, 겨울) 이용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평일 이용 신청은 가능하다.

③ ①항 및 ②항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관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제6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리조트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다음 각호의 예약기준에 의거 별지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이용희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2. 주관처에서 별도로 지정(성수기, 주말, 연휴 등)하여 공지하는 경우 공지 내용에 의한다.

② 주관처는 리조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리조트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리조트를 신청하여 예약 확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이용 당일 현장에서 결제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결정) ① 주말 및 연휴와 성수기(여름, 겨울)는 공지 후 신청 접수받아 추첨으로 결정 하고, 평일은 연중 필요할 때 신청하여 리조트예약이 가능한 경우 확정한다. 단, 리조트회원권의 이용일수를 초과한 경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② 추첨은 신청업체 임·직원 입회(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하에 실시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③ 추첨방법은 뽑기식으로 신청순서에 의거 추첨한다.

제8조(이용신청의 변경·취소) ① 리조트이용이 확정된 회원사가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10일전 까지 주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①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사전 통보 없이 리조트를 이용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1회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③ ②항의 위약금 미납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 주관처에서 인정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간 리조트이용을 제한한다.

1.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였을 경우
2. 리조트이용 과정에서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제10조(이용료 및 이용수칙) ① 리조트 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추가비용(인원 초과, 부대시설 사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이용자는 리조트 이용시 제반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권의 유지·관리) 주관처는 리조트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2]

휴양시설 추천 위임장

상 호 :

대표자 : (인)

(제1안)

본인은 휴양시설 추천에 참석하지 못하여 본인이 행사할 권한을 협회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제2안)

본인은 휴양시설 추천에 참석하지 못하여 아래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인이 행사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생년월일 :

직 위 :

년 월 일

본 인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귀중